



## 인공지능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18726]에 대한 BSA 의견서 | THE SOFTWARE ALLIANCE

2023년 2월 13일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귀하

BSA<sup>1</sup>는 윤두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최종 검토중인 인공지능 기본법 병합안의 기반이 될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BSA는 각국 정부와 세계시장을 중심으로 글로벌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BSA의 회원사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 등 글로벌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BSA 회원사들은 첨단 기술 개발의 선두주자로서, 다양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방안으로서 첨단기술이 가지는 막대한 잠재력과 올바른 사용 및 지속적인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막대한 경제 성장 및 각종 정부 서비스들의 질적 성장과 대응력 증진을 이루어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감안했을 때,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지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인 관점에서 매우 빠르게 진화하는 환경속에서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기술 개발의 노력을 의도치 않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BSA는 인공지능 규제에 대해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으로 소통 해 왔으며, 그동안 제출한 의견서들을<sup>2</sup> 통해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인공지능의 국제적 표준에 맞춰 상호운용성을 향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의견서에서도 이러한 핵심사항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으므로 법안 논의 과정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sup>1</sup> BSA 회원사: Adobe, Alteryx, Altium, Amazon Web Services, Atlassian, Autodesk, Bentley Systems, Box, Cisco, CNC/Mastercam, CrowdStrike, Dassault, Databricks, DocuSign, Dropbox, Graphisoft, IBM, Informatica, Intel, Kyndryl, MathWorks, Microsoft, Nikon, Okta, Oracle, Prokon, PTC, Rockwell, Salesforce, SAP, ServiceNow, Shopify Inc., Siemens Industry Software Inc., Splunk, Trend Micro, Trimble Solutions Corporation, TriNet, Twilio, Unity Technologies, Inc., Workday, Zendesk, and Zoom Video Communications, Inc.

<sup>2</sup> 가. 인공지능 법제화 및 규제방안에 대한 BSA 의견서, 2022년 3월, <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en03182022rokregai.pdf> (영문), <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kr03182022rokregai.pdf> (국문).

나.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13509]에 대한 BSA 의견서, 2022년 4월, <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en04192022alqoi.pdf> (영문), <https://www.bsa.org/files/policy-filings/kr04192022alqoi.pdf> (국문).

## 개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고위험”인공지능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하시거나, 정부가 포괄적이고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언 드립니다. **법안에 대해 보다 자세한 수정 의견은 [별첨 1]의 내용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OECD의 인공지능 정의를 채택해야 합니다.

먼저, 경제협력기구(OECD)의 인공지능 정의를 채택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OECD 인공지능 권고안(이하 “**권고안**”<sup>3</sup>)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인간이 정의한 목표 집합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설계된 예측, 권장 사항 또는 의사결정 등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정의됩니다. 또한 권고안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Autonomy)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OECD의 정의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공지능의 정의를 사용한다면 인공지능의 국제적 채택과 규범의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보다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 2. 고위험 인공지능은 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합니다.

먼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 대신 “고위험 인공지능”의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 드리며, 고위험 인공지능은 1) 법안 제 2 조 제 3 항<sup>4</sup>에 열거된 상황에 배치되거나 사용되는 경우와 2)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의미함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실 것을 제언 드립니다. 인공지능이 '고위험'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인공지능의 성과(Outcome Oriented)와 원칙을 기반(Principle-based)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사용되는 특정 분야에 따라 분류하기 보다는 인공지능이 배치되는 방식과 그 기능에 보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 3.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간 다른 역할을 인지하고, 이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부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관여하는 주체(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을 배포하고 사용하는 주체(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두 사업자의 역할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부합하는 책임을 각각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sup>5</sup> 현재 법안에서 이 두 주체의 역할은 “인공지능사업자 및 인공지능산업”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두 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 별 책임과 의무 또한 명확하게 부여되지 못하며, 이는 규제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1)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확립하고, 2) 법안에서 의무를 규정할 때 어떤 주체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또는 둘 다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며, 3)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를 조항에 명확히 명시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sup>3</sup> OECD 인공지능 권고안, 2019년 5월,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9>. “AI 이해관계자 커뮤니티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AI 시스템과 관련되거나 영향을 받는 모든 단체 또는 개인을 포함한다”고 명시함

<sup>4</sup> 제 2 조 3 항, 가) 에너지, 먹는 물의 공급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나) 보건의료의 제공 및 이용체계 등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다)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 라)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의 안전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는 인공지능; 마) 범죄 수사나 첩포 업무에 있어 생체정보를 분석, 활용하는데 사용되는 인공지능; 바)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사) 그 밖에 국민의 안전·건강 및 기본권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sup>5</sup> OECD는 권고안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채택 시 인공지능에 관련된 여러 이해관계자를 구별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함. 구체적으로, 권고안은 효과적인 인공지능정책은 반드시 인공지능이 배치되는 “역할과 맥락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구분·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

#### **4. 이용자에 대한 정의가 보다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법안 내 "이용자"에 대한 정의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이용자로"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으며, 이 경우 인공지능 기술과 서비스 생태계의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주체가 법안의 실질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이용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별첨 1]에 기술하였습니다.

#### **5. 이용자 사전 고지 의무는 고위험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고지 의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을 제품 및 서비스를 채택 혹은 사용하는 주체, 즉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이용자 통지 책임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 동의합니다. 이러한 책임 배분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기술이 어떻게 배포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6.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당해야 합니다.**

고위험 인공지능의 경우, 1)개발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성, 2)인공지능 배포자가 시스템을 개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3)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정도 등에 따라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 간의 위험 관리를 위한 책임 배분은 달라져야 합니다. 따라서, B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성, 기본 모델이 학습되는 상황과 수단도 함께 고려하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7. 인공지능에 대한 영향 평가를 추진해야 합니다.**

법안 제 25 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검증 및 인증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sup>6</sup> 그러나 인공지능으로 발생하는 리스크와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은 대체로 활용되는 맥락에 따라 상이합니다. 훈련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 기록 보관, 투명성, 정확성 및 인적 감독을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도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성과 인공지능이 배치되는 환경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유연하지 못한 신뢰성 검증 및 인증의 방식 대신 인공지능의 프로세스에 기반하고 결과 지향적인 인공지능 영향 평가를 도입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영향 평가를 통해 조직은 책임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의 영향을 조사하여 유해 편향, 제품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예시를 원하실 경우,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SIT)가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를 참고 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sup>7</sup>

#### **8.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공지능 표준에 맞춰 상호운용성을 향상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개발되고 배치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규제와 표준은 인공지능 기술의 채택과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로 다른 관할 지역에서도 이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본 법안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공지능기술 표준화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시 "국제표준기구 또는 국제표준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강화"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sup>8</sup> 현재 국제표준화기구(ISO)의 AI 표준화 분과위원회<sup>9</sup>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편향성과 인공지능의 신뢰성<sup>10</sup>을 높이기 위한 접근법 등 10 가지 표준에 대한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sup>6</sup> 제 25 조(인공지능의 신뢰성 검·인증 지원 등).

<sup>7</sup> Artificial Intelligence Risk Management Framework (AI RMF 1.0),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https://nvlpubs.nist.gov/nistpubs/ai/NIST.AI.100-1.pdf>.

<sup>8</sup> 제 13 조(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sup>9</sup> ISO/IEC JTC 1/SC 42 at <https://www.iso.org/committee/6794475.htm>.

<sup>10</sup> ISO/IEC TR 24027: 2021 (Bias in AI systems and AI aided decision making) at <https://www.iso.org/standard/77607.html?browse=tc> and ISO/IEC TR 24028:2020 (Overview of trustworthines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t <https://www.iso.org/standard/77608.html?browse=tc>

27 가지 표준을 추가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국제적 표준이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적 표준과 일치하지 않는 국내 표준을 수립할 경우, 표준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실제 현실에서의 사례가 일치하지 않아 국내 인공지능 개발을 저해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 인공지능 기술이 책임감 있게 개발 및 배치되도록 하는 노력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고유의 인공지능기술의 표준화 수립은 경계해야 하며 국제적 표준 개발에 따라 상호운용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 마치며

BSA는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어오고 있습니다.<sup>11</sup> 이를 통해 BSA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의 5대 핵심 요건을 정의한 바 있습니다. 5대 핵심 요건은 인공지능의 개발, 배치 및 사용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을 완화하고 혜택을 증진하는 데 있어 정부와 산업계가 어떠한 핵심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공지능시스템에 대한 확신과 신뢰 구축:** 인공지능 시스템의 개발이 공정성, 정확성, 데이터 출처, 설명가능성 및 책임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 강조
2. **건전한 데이터 혁신 정책:** 데이터의 국외 이전을 촉진하는 법적 체계와 부가가치 서비스(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의 법적 확실성 및 민감하지 않은 정부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 인공지능 및 기타 데이터 기반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는 데이터 정책 추진.
3.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고도화된 보안 대책을 강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소비자 선택을 존중하는 동시에 가치 있는 맞춤형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정책 주창
4. **연구 및 개발:**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한 신뢰 조성, 정부와 업계의 협력 촉진, 인공지능 인력 공급 경로 촉진을 위한 투자 지원
5. **인력 개발:** 미래 일자리의 인력 개발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협력 기회 창출

BSA는 인공지능의 중요성, 그리고 특정 기술의 사용에서 야기되는 잠재적 위험성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편향의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BSA는 “**Confronting Bias: BSA’s Framework to Build Trust in AI**”<sup>12</sup> 보고서를 발행 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에서 BSA는 조직의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 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의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하기 위한 영향 평가 수행 지침을 제공하였습니다.

BSA는 본 의견서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본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서 관련 질문이 있으시거나 세부적인 논의를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ham Shen Hong*

Tham Shen Hong  
Manager, Policy – APAC  
[shenhongt@bsa.org](mailto:shenhongt@bsa.org)  
+65 91719408

<sup>11</sup> BSA AI Policy Overview, accessible at <https://ai.bsa.org/>

<sup>12</sup> Confronting Bias: BSA’s Framework to Build Trust in AI, June 2021, <https://ai.bsa.org/wp-content/uploads/2021/06/2021bsaaiibias.pdf>.

## 별첨 I: 세부 수정 의견

### OECD 와 동일한 인공지능의 정의 사용

원안	제안
<p><b>제 2 조(정의)</b></p> <p>(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p>	<p><b>제 2 조(정의)</b></p> <p>(1) “인공지능”이란 <b>인간이 정의한 목표 집합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설계된 예측, 권장 사항 또는 의사결정 등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b></p>
<p><b>해설:</b></p> <p>인공지능시스템은 국제적인 맥락에서 개발되고 배포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과 자동의사결정시스템에 적용되는 규정과 표준은 서로 다른 관할권 간 상호 운용이 가능하게 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추가적인 채택과 사용을 촉진하도록 해야 합니다.</p> <p>이와 관련하여, BSA 는 경제협력기구(OECD)에서 정의한 인공지능 개념을 채택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OECD 의 인공지능 권고안(이하 “권고안”<sup>13</sup>)은 인공지능을 “인간이 정의한 목표 집합에 대해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설계된 예측, 권장 사항 또는 의사결정 등을 내릴 수 있는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인공지능 시스템이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 안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OECD 의 본 정의는 유럽연합<sup>14</sup>을 포함한 다양한 규제당국에서 참조하고 있습니다. OECD 의 정의와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정의를 사용한다면 국제적 조정, 대화, 채택 및 컴플라이언스 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p>	

### 고위험인공지능의 정의 명확화

원안	제안
<p><b>제 2 조(정의)</b></p> <p>(3)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으로서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 권의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p>	<p><b>제 2 조(정의)</b></p> <p>(3) “고위험 인공지능”이란 (i) <b>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 배치되거나 활용되고, (ii)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장되는 기본권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위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인공지능을 말한다.</b></p>
<p><b>해설:</b></p> <p>명확한 정책 의도 수립을 위해 고위험인공지능의 정의를 개인에게 법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p>	

<sup>13</sup>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Artificial Intelligence, May 2019,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49>. Per the Recommendation, the AI stakeholder community “encompasses all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involved in, or affected by, AI systems, directly or indirectly.”

<sup>14</sup> The European Union’s draft Artificial Intelligence Act currently defines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as “software that ... can, for a given set of human-defined objectives, generate outputs such as content, predictions, recommendations, or decisions influencing the environments they interact with”.

또한 현재 법안과 같이 고위험 영역에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결정하는 조건은 누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고위험인공지능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a)개인의 안전 및 기본권을 침해해야 하며, b) ‘고위험’으로 간주되기 위한 특정 범주, 예를 들면 에너지 공급과 같은 상황에 속해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 혹은 의료와 같은 특정 산업에서 급여정산을 위해 사용되는 저위험인공지능이 고위험인공지능으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BSA는 단순히 특정 분야에서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인공지능을 "고위험 인공지능"로 분류하기보다는 인공지능이 배포되는 방식과 기능에 따라 "고위험 인공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다.

###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명확한 구분 및 이에 따른 책임 부여

원안	제안
<p><b>제 2 조(정의)</b></p> <p>(5)“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기술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이하 “인공지능제품”이라 한다)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이하 “인공지능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p> <p>(6)“인공지능사업자”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자를 말한다.</p>	<p><b>제 2 조(정의)</b></p> <p>(5) ”인공지능개발사업자”란 내부 사용 또는 제 3 자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 시스템을 설계, 코딩, 제작 또는 수정하는 법인을 말한다.</p> <p>(6)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채택하고 사용하는 법인을 의미한다. 단,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자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는 경우, 해당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이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된다.</p>
<p><b>해설:</b></p> <p>법안은 인공지능 개발에 관여하는 주체(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을 배포하고 사용하는 주체(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이해관계자의 각기 다른 역할과 역량에 부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sup>15</sup> 현재 법안에서 이 두 주체의 역할은 “인공지능사업자”로 통칭되고 있습니다.</p> <p>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게 부여되지 않아 규제에 혼란을 초래하고, 각 주체는 이행하기에 부적합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27조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소비자가 상업적 또는 조직적 맥락에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사용할지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p> <p>반면에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동일한 법인인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사내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하여 비즈니스 운영 과정에서 이를 배포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이면서 동시에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됩니다.</p>	

<sup>15</sup> The OECD recognized the critical importance of distinguishing the multiple stakeholders involved in AI when it adopted the principles underlying the Recommendation. Specifically, the Recommendation recognizes that effective AI policies must necessarily account for “stakeholders according to their role and the context” in which AI is being deployed.

위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B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확립하고, 2) 법안에서 의무를 규정할 때 어떤 주체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 또는 둘 다 이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결정하며, 3) 해당 의무가 적용되는 주체를 조항에 명확히 명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용자”의 정의 명확화

원안	제안
<p><b>제 2 조(정의)</b> (7)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p>	<p><b>제 2 조(정의)</b> (7) “이용자”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받아, <b>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하는 최종 이용자로,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b></p>
<p><b>해설:</b> "이용자"의 기존 정의는 이용자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간주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b>BSA가 제안한 수정된 정의는 “이용자”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b> 만약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공지능 기술 및 서비스 생태계의 모든 주체에게 법안의 요구사항을 준수할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입니다.</p>	

## 고위험 인공지능의 확인 (용어 정리)

원안	제안
<p><b>제 26 조(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확인)</b> (1) 제 2 조제 3 호 각 목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 활용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p> <p>(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4)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 26 조(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확인)</b> (1) 제 2 조제 3 호 각 목에 따른 인공지능 또는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 활용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인공지능이 <b>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b>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p> <p>(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 1 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b>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b>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p> <p>(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b>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b>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p> <p>(4) 제 1 항과 제 2 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해설:**

“고위험 인공지능”의 용어를 법안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함. (“고위험 인공지능의 정의 명확화” 파트 참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고지 의무**

원안	제안
<p><b>제 27 조(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고지 의무)</b></p> <p>(1) 고위험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p> <p>(2) 제 1 항에 따른 고지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서에 포함시키는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p>	<p><b>제 27 조(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는 인공지능의 고지 의무)</b></p> <p>(1)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b>이용자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을 도입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b></p> <p>(2) 제 1 항에 따른 고지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명서에 포함시키는 등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한다</p>
<p><b>해설:</b></p> <p>제 27 조는 고위험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27 조의 1 항은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법인은 이 의무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인공지능 개발 사업자는 고객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훈련시키거나 사용할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충족하기 어려운 의무입니다. 이러한 의무를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대신, 제품과 서비스에 고위험인공지능을 채택하거나 사용하는 주체, 즉 인공지능이용사업자에게 고지할 책임을 부여하는 제 27 조 1 항의 정책적 의도에 동의합니다.</p> <p>이러한 책임 배분은 인공지능개발사업자가 기술이 배포되는 정확한 방식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BSA는 이러한 정책의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 내용을 제안하였습니다.</p>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명확한 책임 배분**

최종 법안에 고위험 영역에서 ‘인공지능 관련 비즈니스’의 추가 책임을 명시하는 조항 (예: 해당 비즈니스가 인공지능 시스템의 신뢰와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이 포함될 경우, 해당 조항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이 안전하고 보안이 확보된 방식으로 개발 및 배포되도록 보장하는데 있어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두 주체 모두 자신에게 어떤 조치가 적용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조치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 인공지능이용사업자 또는 둘 다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는 조치가 각자의 역할과 역량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BSA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포함되기를 제안 드립니다.

**제안**

**제 XX 조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인공지능개발사업자 및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책임)**

(1) 인공지능개발사업자는 자신이 설계하거나 개발한 고위험 인공지능의 신뢰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인공지능이용사업자는 채택, 사용 또는 다른 방식으로 배포한 고위험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즉, 해당 조치가 어느 주체에 적용되는지, 또는 둘다에 적용되는 지 명시하여야 한다.

고위험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각 주체의 적절한 책임 배분을 위해선 개발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성,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개발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가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BSA는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개발사업자의 역할과 책임 뿐만 아니라 개발 중인 인공지능 시스템의 특성과 기반 모델이 학습되는 상황 및 수단도 함께 고려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E.O.D)